

서 약 서

본인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서 접수된 심의요청 안전에 대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
6. 해당 안전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